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중 소 기 업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6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향토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지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안 제54조의3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5(향토기업의 기여도 기준) ① 법 제62조의26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법인세 납부, 지역인재 고용율, 장기고용유지 등 경제적 기여 정도

2. 행정 법규 준수, 산업안전 및 보건,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정도

② 그 밖에 향토기업의 기여도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4조의35(향토기업의 기여도 기준) ① 법 제62조의26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법인세 납부, 지역인재 고용율, 장기고용유지 등 경제적 기여 정도 2. 행정 법규 준수, 산업안전 및 보건,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정도 ② 그 밖에 향토기업의 기여도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연 락 처	042 - 481 - 4388